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354

발의연월일: 2024. 9. 26.

발 의 자:김용태・박준태・우재준

강승규・한기호・박충권

이성권 · 서천호 · 김성원

조은희 · 송석준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도시 지역의 교육서비스 수요 급증에 따라 2개 이상의 시· 군·구를 관할하고 있는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데, 현재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급변하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교육지원청 운영에 한계가 있음.

또한,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학교의 행정업무를 경감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이를 체 감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위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과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 요한 경우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시·도교육감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 또는 통합·분리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장 의 분장 사무에 관할 학교의 운영·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뿐만 아 니라 지원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제35조제1호).

법률 제 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명칭은 대통령령으"를 "명칭, 위치는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 및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을 설치 · 폐지 또는 통합 · 분리할 수 있다. 이때 관계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의 변경사항을 해당 시 · 도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제1호 중 "지도·감독"을 "지원 및 지도·감독"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① (생 략)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	② 명
<u>칭은 대통령령으</u> 로 정한다.	<u>칭, 위치는 조례</u>
<u> <신 설></u>	③ 교육감은 학교 교육의 효과
	적인 지원 및 교육지원청의 효
	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
	또는 통합·분리할 수 있다. 이
	때 관계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의
	변경사항을 해당 시ㆍ도의 조례
	로 정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u>③</u> · <u>④</u> (생 략)	<u>④</u> ・ <u>⑤</u>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35조(교육장의 분장 사무) 교육	제35조(교육장의 분장 사무)
장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	
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	
를 위임받아 분장한다.	
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	1
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	
·관리에 관한 <u>지도·감독</u>	지원 및 지도·

	<u> 감독</u>
2. (생 략)	2. (현행과 같음)